기업의 고용창출과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한

기업맞춤 고용정책

2026 고용 더+dream 드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업의 고용창출과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한 기업맞춤 고용정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의 고용창출과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기업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지역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 수록하였습니다.

수록 내용을 활용한
인재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동구·서구·대덕구 480-3943 유성·중구·금산 480-3949〉

01 인재 채용지원 서비스

1. 구인신청과 인재알선 12
2. 채용대행서비스 13
3. 구인·구직 만남의 날(일자리수요데이) 14
4. 차별화된 구인 홍보 서비스 16
5. 외국인 고용허가제 18
6.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02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❶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1.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26

❷ 고용창출장려금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0
2.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34

❸ 청년·장년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0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42

❹ 고용안정장려금

1. 공통사항 46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48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51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54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58

❺ 고용유지지원금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64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68

목 차 CONTENTS

03 직업능력 개발제도

1. 능력개발전담주치의 72
2. 체계적 현장훈련(S-OJT) 73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74
4. 일학습병행 75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6
6. K-하이테크 플랫폼 77
7.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78
8. 국민내일배움카드 79

04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1. 국민취업지원제도 82
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84
3. 청년도전지원사업 85
4. 청년성장프로젝트 86

05 유관기관 지원사업

1. 근무만족도 제고 프로젝트 90
2. 근로자 안전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91
3. 미래인재 채용연계 인턴십 지원사업 92
4. 경력형 인재 채용지원 장려금사업 93
5. 구조혁신지원사업 94
6. 재정 및 융자지원 사업 95
7.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96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97
9.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98

06 노동관계 법령 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내용 102
2.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106
3.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 110
4.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111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12
6.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지원사업 113
7.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노동법 가이드 116
8. 일·생활 균형 캠페인 117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18

우리 회사에 필요한 고용서비스 찾기

1 인재 채용지원 서비스

① 우리 회사는 직원(신입, 경력)을 채용하고 싶다	**구인신청과 인재알선**	12쪽
② 인사담당자가 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절차를 줄이고 싶다	**채용대행서비스**	13쪽
③ 구인·구직 현장면접을 편리하게 하고 싶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수요데이)**	14쪽
④ 우리 회사의 가치와 구인정보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	**차별화된 구인 홍보 서비스**	16쪽
⑤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싶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18쪽
⑥ 우리 회사의 입사지원자들이 서류를 돌려받길 원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쪽

2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① 기업 현황을 진단받고, 기업별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받고싶다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26쪽
②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30쪽
③ 우주국방 및 식료품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한다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34쪽
④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40쪽
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42쪽
⑥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48쪽
⑦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51쪽
⑧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54쪽
⑨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58쪽
⑩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64쪽

3 직업능력개발제도

① 우리 회사에 맞는 직업훈련을 컨설팅 받고 싶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72쪽
②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직원교육을 동시에 하고 싶다	체계적 현장훈련(S-OJT)	73쪽
③ 단기간에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74쪽
④ 신입사원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일학습병행	75쪽
⑤ 담당 업무에 맞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활용하고 싶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6쪽
⑥ 디지털분야 훈련 및 훈련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싶다	K-하이테크 플랫폼	77쪽
⑦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받고 싶다	K-디지털 트레이닝	78쪽
⑧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	국민내일배움카드	79쪽

4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①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고 싶다	국민취업지원제도	82쪽
② 경력개발을 위한 1:1 맞춤형 심층상담서비스를 받고 싶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84쪽
③ 구직단념 청년으로서 수당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청년도전지원사업	85쪽
④ 청년을 위한 공간에서 스터디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년 정책도 안내받고 싶다	청년성장프로젝트	86쪽

5 유관기관 지원 제도

① 우주 국방산업 채용근로자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만족도제고 근로자 안전 및 환경개선	90쪽
② 우주 국방산업 인턴십 지원, 경력직 인재채용에 대한 지원이 받고 싶다	인턴십 지원사업 경력형 인재 채용장려금	92쪽
③ 우리 회사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생각이 있다	구조혁신지원사업	94쪽
④ 우리 회사에 유해 위험요인 개선 비용에 대해 융자 및 지원을 받고 싶다	재정 및 융자지원사업	95쪽
⑤ 우리 회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시키고 싶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	96쪽
⑥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싶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97쪽
⑦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고 싶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98쪽

6 노동관계 법령 등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 알고 싶다	**근로기준법**	102쪽
②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다	**최저임금법**	106쪽
③ 사업주가 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고 싶다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	110쪽
④ 30명 이상 다수 근로자의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111쪽
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12쪽
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받고 싶다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113쪽
⑦ 노동관계법령(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을 노동청에 편리하게 문의하고 싶다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노동법 가이드**	116쪽
⑧ 근로자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싶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	117쪽
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	1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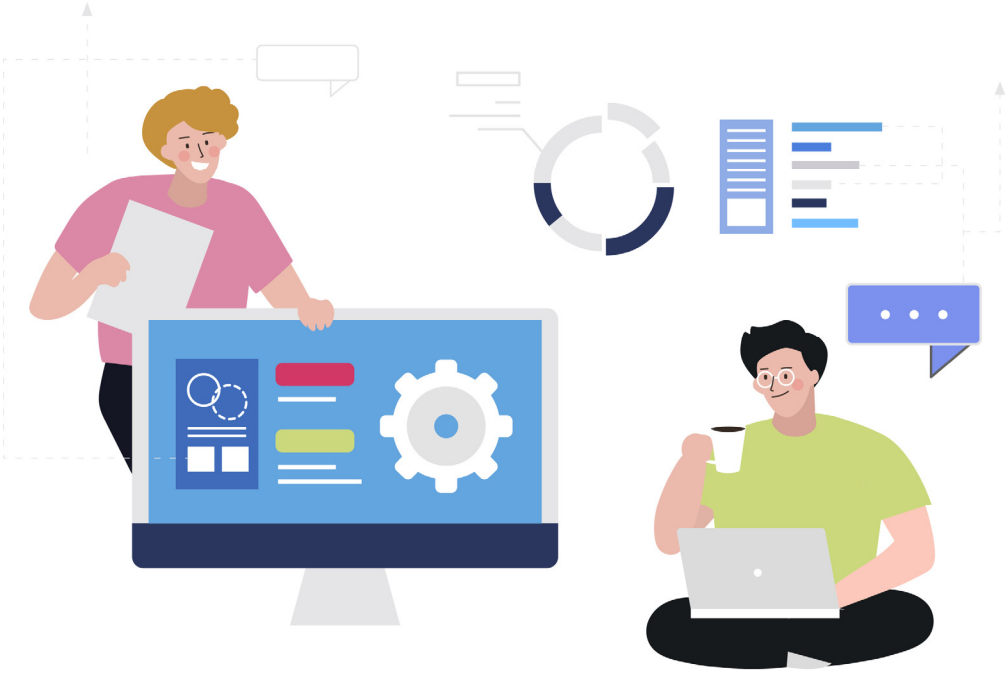

2026 고용 더+dream 드림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chapter 01

인재 채용지원 서비스

1. 구인신청과 인재알선 12
2. 채용대행서비스 13
3. 구인·구직 만남의 날(일자리 수요데이) 14
4. 차별화된 구인 홍보 서비스 16
5. 외국인 고용허가제 18
6.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01 구인신청과 인재알선

인재 채용, 고용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채용지원서비스의 절차

고용24 회원가입
www.work24.go.kr

구인신청
(온라인,팩스,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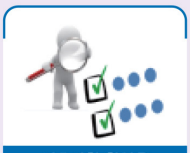

기초사항 확인후
고용센터 인증

구직자 알선
채용지원서비스

채용여부
확인 및 마감

채용지원서비스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취업알선	•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 인재를 탐색하거나 구인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모집하여 사업장에 추천
구인·구직 만남의 날	• 고용센터의 시설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채용대행	• 기업에서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모집·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접수·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
동행면접	• 면접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면접 시 고용센터 상담자가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유의사항 : 고용24 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는 신청 불가

고용24 구인신청 등 인재채용 절차

고용24 회원가입 → 구인신청 및 구인인증 → 인재탐색 입사제안 및 센터알선 → 채용마감 결과통보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사업자 등록번호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은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함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방문 또는 팩스로 구인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조건을 설정하여 구인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상세한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재조건) 신입/경력, 학력 (전공 등), 자격증, 모집인원 등
  (근로조건) 직무내용,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전형방법) 마감일 접수방법, 인사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구인인증 절차는 허위구인 또는 기타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직접 탐색하여 구직자에게 SMS 및 이메일 발송하여 입사지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 근무지, 학력, 전공, 경력 등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원하는 인재를 탐색한 후 SMS 입사제안 및 지원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인재 채용이 완료된 경우 채용결과 통보하여 구인신청을 마감해야 하며, 구인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채용이 안된 경우 재구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채용대행서비스

채용절차, 고용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채용대행서비스는?

- 기업에서의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채용 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Tip 이런 기업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제한된 인력 여건으로 채용 절차 진행이 부담스러운 경우
· 다수의 지원서가 접수되어 선별과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맞춤 인재 탐색과 채용에 대해 집중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이렇게 지원합니다

- 구인공고와 구직자 문의에 따른 안내 및 상담, 서류접수를 제공합니다.
- 구직자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채용 요건에 맞춰 선별 알선합니다.
-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병행하여 면접 절차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채용대행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제공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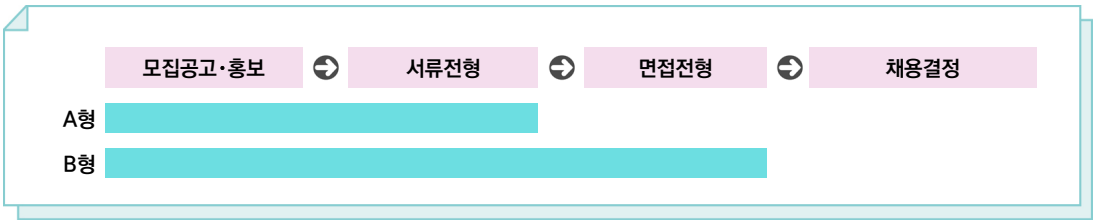

- **(A형)** 서류전형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 모집공고 및 홍보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인터넷(고용24) 또는 방문 접수 → 구인 기업의 제시 기준에 따라 채용서류 정리 또는 심사(항목별 평가, 점수 부여 및 순위 결정 등) 실시 → 구인기업에 결과 통지 및 접수된 채용서류 전달

- **(B형)** 서류전형부터 면접전형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

  * 모집공고 및 홍보 → 서류전형(심사는 기업에서 실시 가능)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또는 면접 참여 지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24 구인신청 시 '채용대행서비스 희망'란에 체크☑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03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수요데이)

고용센터 상설채용관에서 편리한 면접 진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 기업이 원하는 인재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사전에 섭외, 고용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ip 이런 기업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폭넓게 구직자 면접을 보고 싶은 경우
· 기업 홍보 등을 병행하여 채용면접을 진행하려는 경우
· 기업 면접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비대면 면접시스템 구비
· 교통편 등의 사유로 사업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일자리 수요데이란?

- 구인·구직 현장 면접, 기업설명회, 취업컨설팅, 업종(산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용센터의 핵심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Tip 일로 work 일로 come on 대전고용센터 일자리수요데이

· 대전고용복지+센터는 매월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수요데이 일로 work 일로 come on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장소)** 대전고용복지+센터 4층
* 매월 행사는 대전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go.kr/daejeon) 〉 알림마당 〉 "행사일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합니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당일 충분한 구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사전에 적합인재 탐색과 취업알선을 시행합니다.
- 고용센터와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이 함께 적합 구직자를 탐색하여 채용성공률을 높입니다.
- 면접 조편성과 면접대상자 사전 연락, 면접 대기와 순번에 따른 면접 진행 등 면접 절차를 지원합니다.
- 면접 전에 기업별 채용설명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에 더욱 적합한 구직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에 대한 안내(유선, 이메일)를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까지 서비스 해드립니다.

기업은 인사담당자가 고용센터에 오셔서 면접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 대전고용복지+센터 면접 시설 】

면접실1 (기업도약룸)

면접실2 (플러스룸)

다수 면접 (컨벤션룸)

민원대기공간 (기업도약룸)

※ 면접장 구성은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 가능

04 차별화된 구인 홍보 서비스

대전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중점기업 홍보

- 우리 지역 우수기업을 한곳에 모아 인재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기업 기본정보, 재무정보, 채용현황 등을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에 바로 입사지원 할 수 있도록 인재 채용을 지원합니다.
- 현장탐방기를 통해 기업 특성과 비전 등을 공개하여 기업홍보를 강화합니다.

대전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우리 지역 중점기업 홍보(우리동네알짜기업))

기업정보
(기본정보, 회사소개, 재무정보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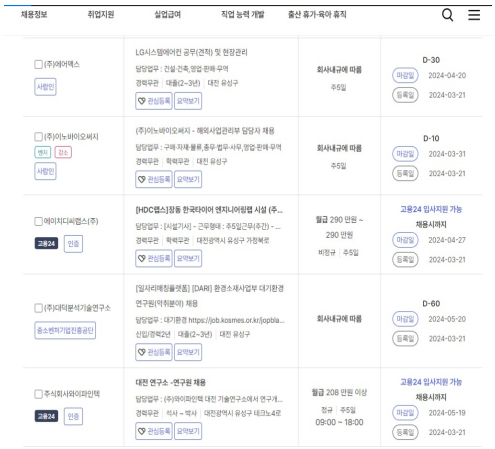

채용정보
(고용24 및 민간사이트 구인현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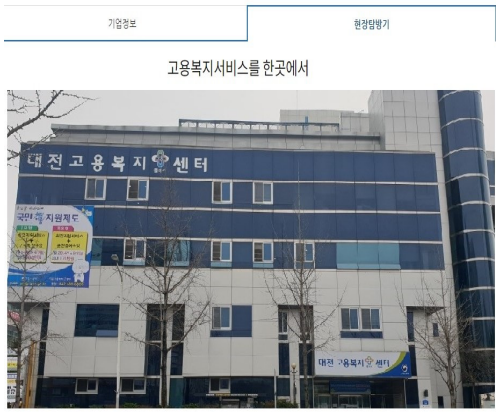

현장탐방기
(경영철학, 인재상, 복리후생 등 확인)

* 대전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go.kr/daejeon) 〉 알림마당 〉 우리동네 알짜기업 & 교육기관 〉 "우리동네 알짜기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점기업·특별업종·일자리수요데이 채용정보 홍보

- 우리 지역 중점기업, 특별업종, 일자리수요데이 채용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판에 등재하고 배포하여 채용정보를 홍보합니다.
  - 관내 특성화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점기업 구인정보

특별업종 구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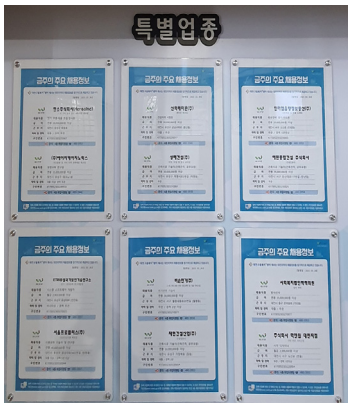

일자리수요데이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24 구인배너 홍보

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 개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와 특례외국인근로자(H-2) 방문취업제로 구분

사업 내용

-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 **허용기업**: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등 13개 업종)
  - **도입대상**: 인력송출국(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17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고용절차**

01 내국인 구인노력	0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03 고용허가서 발급	
04 근로계약 체결	05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0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07 사업장배치, 고용 및 체류지원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 **특례외국인근로자(H-2) 방문취업제**
  - **F-4비자로 통합됨에 따라 H-2 신규발급 중단, 기존 H-2 체류자격은 현재와 동일**
  - **허용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광업 및 서비스업 중 24개 업종 제외)
  - **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 **고용절차**

01 내국인 구인노력	02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03 근로계약 체결	04 근로개시 신고

* 동포는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신청방법(제조업 사례)

- **신청기간:** 2월, 4월, 7월, 9월, 11월 중 약 2주간

  * 연도별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동의서 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일·휴게시간, 임금 조건, 기숙사·식사 제공 및 근로자 비용부담 여부 등) 기재

  * 근무장소가 본사가 아닌 지사, 공장인 경우 해당 장소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

  * 고용보험은 본사와 통합 관리되거나 지사, 공장이 분리하여 가입되어도 가능

- **제출방법:** 외국인력팀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발급신청서 제출

허가인원 한도(제조업 사례)

-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3개월 평균)에 따라 고용 허용인원 최대 80명, 피보험자수 1명이상 10명이하인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 피보험자수 3명 시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최대 13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종,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

일반·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

-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특례외국인근로자는 비자발급 후 첫 입국일(또는 입국 후 비자변경일)로부터 3년간 근무 가능하며,

  - 3년 종료가 되기 1달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여 고용허가를 받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10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음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개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① 특례고용가능 확인 → ② 근로개시 신고 → ③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의 절차 순차 진행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042-470-8321~8, www.eps.go.kr)

06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 목적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하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불리변경 금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구인광고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후 구인조건 임의변경 금지	저작권 등 귀속강요 금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부담 금지	채용서류반환 등
채용심사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042-480-6225)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chapter 02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Ⅰ.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25
Ⅱ. 고용창출장려금 29
Ⅲ. 청년·장년고용장려금 39
Ⅳ. 고용안정장려금 45
Ⅴ. 고용유지지원금 63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I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1.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01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사업개요

- 기업현황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유형에 따라 일·육아제도 컨설팅, 각종 지원금 안내, 채용알선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1 ✓ 진단	2 ✓ 종합 컨설팅	3 ✓ 채용 지원	4 ✓ 기초서비스
• 행정정보 분석 등 기업 특성 진단 •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관련 부서·기관 협업을 통한 종합 컨설팅 실시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제시, 지원사업 연계	• 채용대행,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 월 1회 이상 상담 실시 •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변동사항 등 확인 • 서비스 수요 발생 시 연계

서비스 내용

❶ **(진단)** 기업의 임금·복지 수준, 일자리 특성, 구인애로 요인 등 **진단**

❷ **(종합 컨설팅)** 진단·분석 결과와 현장방문 상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제시**, 활용가능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 ✓ **인사·노무컨설팅**: 근로조건(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조직문화 개선(일터혁신컨설팅, 공정채용컨설팅 등)
- ✓ **지원금컨설팅**: 채용계획에 따라 고용창출, 고용안정 등 기업지원금 연계
- ✓ **일·육아지원컨설팅**: [❶수준]지원제도 및 법적 의무사항 설계, 지원금 신청서 작성 지원 등 단순상담→ [❷수준]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매칭, 사내 제도 설계, 규정 마련 등 심층적인 설계·진단→ [❸수준]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연계
- ✓ **인프라·환경 개선 컨설팅**: 산업안전 대진단, 유해 작업장 환경 개선, 휴게시설 개선 등 기업의 인프라·작업환경 개선
  ※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유해 작업장 환경개선 등
- ✓ **맞춤형 인재 양성 컨설팅**: RSC,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부처별, 지역별 다양한 훈련사업 연계
- ✓ **인지도 제고 지원**: 기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기업카드 제작 등 지원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홍보 지원 사업 연계·활용

❸ **(일자리발굴·채용 지원)** 기업 상황에 맞춰 채용대행,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 **채용 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❹ **(기초 서비스)** 기업 인사 담당자와 월 1회 유선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서비스 안내, 애로사항과 주요 변동사항 등 청취**

문의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종합서비스팀(042-480-6020, 6073, 6074)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Ⅱ

고용창출장려금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0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고용24)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구 분	6개월 지원액	1년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25.1.1.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으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주관부처	취업지원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2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4	법무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5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6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7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9	고용노동부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10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11	고용노동부	·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 ·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12	고용노동부	· 청년도전 지원사업
13	중소벤처기업부	· 희망리턴패키지
14	고용노동부	· 중장년경력지원제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⑥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조정 제한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원절차

구직등록	지원가능 취약계층 채용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지도점검
실업자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02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 지역별 고용 상황을 고려, 취업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취업알선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계하는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구 분	지원 유형	1년 지원조건
Ⅰ유형	아래의 구직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일반 사업주 ① 실업기간 3개월이상, 만 34세이하 - 취업똑똑 신청자, 특성화고 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 청년 ②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참여자(3회이상 상담)	① 고용24 구인신청 ②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받아 채용
Ⅱ유형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② 우주·국방산업(44개 세부업종) ③ 식료품 제조업	① 고용24 구인신청 ② 기업체질개선* ③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받아 채용

* 기업체질개선: 컨설팅에서 진단된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ex. 기도패 참여, 건강검진 지원, 여성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산업안전대진단 신청 등)

지원내용

- 1인당 720만원(1년간 지원)

지원한도

- 피보험자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3명)

(지원제외 사업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관련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채용(또는 채용예정)

②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

* 관련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고용센터에서 알선하지 않은 근로자

⑧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or 프리랜서 등)하고 있는 근로자

⑨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 관련 사업주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원절차(Ⅰ유형)

대상 구직자 선정	구직자 발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취업알선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자 근속확인 등 사후관리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지급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지원절차(Ⅱ유형)

대상업종 선정 (심사위승인)	기업 발굴+컨설팅	기업체질개선 활동+구인신청	알선대상구직자 발굴+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취업알선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취업자 근속확인 등 사후관리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지급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III

청년·장년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도모

1-1 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요건

- (청년요건) 지원대상 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
- (기업 요건) 비수도권 소재 기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지원(최대720만원)
-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기준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목표 인원은 5,000명(각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250명)으로 총 5,000명 지원인원 달성시점부터 기업의 참여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1-2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34세의 청년

지원요건

- (청년 요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근속, 해당기업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음
- (근로 조건) 주 28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취업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각 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취업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각 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취업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각 180만원)

신청절차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기업/위탁기관		기업		위탁기관		고용센터
·(기업)참여신청서 제출 ·(기관)자격심사 및 협약체결	➔	·정규직 청년채용 ·임금지급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사전요건 검토 ·심사결과 보고 ·지급의뢰 요청	➔	·최종 심사 ·지원금 지급

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전연도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제외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자,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1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26년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소재 사업주에게는 분기 120만원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센터→ 사업주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IV

고용안정장려금

1. 공통사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01 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

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방식 및 절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지원절차**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및 (불)승인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지급 신청서 제출	➔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 참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 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 정부(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또는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진단참여 기업 등

대상 선정(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제외 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②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0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개요

- 근로자가 가족돌봄, 임신,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지원요건(육아기 10시 출근제)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돌봄 사유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후에는 주당 30시간 초과 35시간(매일 1시간 이상 단축)이하여야 함

  ※ 육아사유로 근로시간을 주당15~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는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함

- 단축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제한

지원요건(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임신일로부터 출산 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사업주 보전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활용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지원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금신청 이후 변경 할 수 없음

지원제외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급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

지급신청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단위로 신청

신청절차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센터→ 사업주

0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개요

-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

※ 생명·안전 업종·장시간 노동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지원대상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요건

① **(노사 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② **(계획수립·이행)**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

③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승인)** 사업주는 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④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사항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함

⑤ **(실근로시간 감소)**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이하 '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이하 '전면도입') 감소

* 사업장 내 일부 직군 또는 부서단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규모·유형별로 최대 1년간 ① 도입지원은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 ② 신규 채용인원은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 **(도입지원)**

    ① (20인 이상~50인미만 기업) 부분도입 → 1인당 월 30만원 전면도입 → 1인당 월 50만원

② (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분도입 → 1인당 월 20만원 전면도입 → 1인당 월 40만원

③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여기에 월 10만원을 가산 지원

※ (전면도입)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 (부분도입) 실근로시간 2시간 미만 단축

※ (비수도권 기업) 일반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 소재 사업장

*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명시

- **(신규 채용지원)**

① (20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원

② (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

- **(지원인원 및 한도)** 기업규모와 단축 노동시간을 반영하여 설정

- **(도입지원)**

① (20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② (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신규 채용지원)** 단축된 노동시간 및 대상 근로자 수를 반영하여

$$\text{지원한도} = \frac{(\text{실근로시간단축대상 근로자} \times \text{단축시간})}{(40\text{시간}-\text{단축시간})}$$

-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실근로 사건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중 실근로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

지원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급기간 및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장려금 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지원방식(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신청서 (계획서포함) 심사 및 (불)승인	심사결과 통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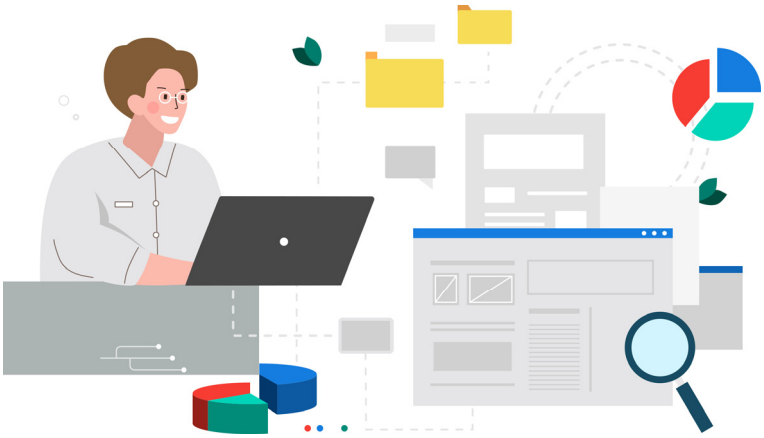

04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개요

-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4-1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요건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동 제도를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유 형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원격근무제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에 출근(퇴근)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에 제도 활용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다른 날 증가 가능),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총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 선택근무제는 월 5회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제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시차출퇴근제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48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함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4-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지원대상

-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우수기업 명단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지원요건

- 인프라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설치)형 2년/ 사용료 방식 개별 약정 기한(최대 2년)

- 사용의무기간 내에는 지원받은 시스템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시스템 미사용 포함) 매각, 폐업의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

  *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용의무기간 동안 고용센터의 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인프라 시스템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시스템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주 투자금액(부가세 제외) 대비 80%, 최대 1천만원을 지원
- 30인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지원

  * 단, 지원대상 기간은 최초 개별 약정된 사용기간이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시스템 지원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불)승인 및 심사결과 통보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WORK & LIFE BALANCE
WLB
일·생활·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0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개요

-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5-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5-2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제한(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적용여부 선택 가능)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허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사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5-3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수준

-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월 1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원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추가지원)	월 10만원

*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동안 월 100만원 지원(2025년 12월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4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본지원	월 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적용	월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한번도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120~140만원 지원**

제도 유형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근로자 제도 사용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사업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지원**

제도 유형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및 주기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기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다만,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 (주기)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100%를 3개월 주기로 지급

* (사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 (2026년 1월 1일 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한 경우) 제도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100분의 50을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제도 사용 근로자를 제도 사용 종료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 **업무분담 지원금**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 (주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 중 지원금의 100%를 3개월 단위로 지급

제출서류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지원금만 해당)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파견 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파견근로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 업무분담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지급 사실 증명자료(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신청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V

고용유지지원금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0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개요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1]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2] 휴업·휴직을 실시[3]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4] 사업주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인 경우

③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2)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입증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등)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휴업은 역월 단위)

(3) 고용유지조치 실시

-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 **(휴직)**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4)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5) 지원제외 사유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 실시를 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미만인 피보험자

지원수준

지원내용	일반업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 1일 한도 68,100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8/10 (대규모기업 6/10) 지원 ※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7/10 ※ 1일 한도 68,100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 ※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 1일 한도 70,000원 (대규모기업 68,100원)

지원기간

- 유급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연도와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총 180일 한도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1-1 휴업

사업개요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단,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1-2 휴직

사업개요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피보험자당 1일 68,100원 한도)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단,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0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개요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 (1)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후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결과에 대해 지원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인 경우

③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2)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급휴업)** Ⓐ30일이상 실시,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근로자대표 협의

  * 19명 이하(50%), 99명 이하(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10%), 1000명 이상(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하여야 함

- **(무급휴직)** Ⓐ30일이상 실시, Ⓑ일정규모* 이상 실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99명 이하(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10%), 1000명 이상(100명 이상)

  **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실시

지원제외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 제한('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부터 적용) 등

지원금액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8,100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지원, 근로자별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사업주 지급)

지원절차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신청(매월)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청·지청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노사협의(합의)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30일전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chapter 03

직업능력개발제도

1. 능력개발전담주치의 72
2. 체계적 현장훈련(S-OJT) 73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74
4. 일학습병행 75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6
6. K-하이테크 플랫폼 77
7.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78
8. 국민내일배움카드 79

01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홈페이지(www.hrd4u.or.kr)

사업개요

-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 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HRD종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기본 단계	**기업HRD이음컨설팅** • 기업 진단 및 역량 분석 • 적합훈련 추천(HRD제안)	➔	**과정개발 컨설팅** • AI 추천기반 맞춤형 훈련 (사업주 자체훈련, S-OJT)	➔	**훈련성과 분석** • 만족도+성취도+적용도 (훈련성과 피드백)
심화 단계	**심층진단컨설팅** • HR현장이슈 및 원인도출 •역량개발 및 환경개선 결과	➕	**훈련체계수립컨설팅** • 직무분석 및 역량모델링 • 기업 훈련체계 수립 및 연 단위 훈련계획 도출	➔	**능력개발클리닉** • 기업 단위 HRD역량 지원 • 훈련 로드맵 구축 등 기업 역량 배양 등 밀착 관리 (최대 3년간 지원)

주요 지원사업

사업주훈련 (자체 및 위탁)	체계적 현장훈련 (S-OJT)	일학습병행
▪ 접근성이 용이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훈련	▪ 기업 맞춤 교육프로그램 기반 사업장 내 자체적 현장실무 교육훈련	▪ 초기 입직자(3년이내)에 대한실무와 이론 병행 교육 훈련

컨설팅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홈페이지(https://HRD4U.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042-580-9110, 9119)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042-580-9110, 9119)

02 체계적 현장훈련 (S-OJT)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홈페이지(www.hrd4u.or.kr)

사업개요

- 사업장 내에서 현업을 바탕으로 노하우 전수, 현장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요건

- **(대상기업)** 현장훈련에 적합한 직무* 를 수행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부적합 직무: 직접 생산활동이 아닌 직무, 해당 직무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업무, 단기근로자 대체 가능한 직무, 외국어 교육 등

- **(훈련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시간인원)** 4시간 이상(훈련 시간), 10명 이내(훈련 인원)

지원 내용

- 사내강사 역량향상 지원(온라인 교육)
- 훈련비용 지원: 훈련과정개발비, 훈련비, 사내 및 외부강사 수당

참여 절차

S-OJT 참여신청 (HRD이음 컨설팅포함)	심사 및 선정	사내강사 역량향상교육 (온라인)이수	훈련프로그램개발 (표준/맞춤형)	과정인정 (HRD-Net) 및 훈련실시	수료보고 /비용신청
기업 → 한국산업인력 공단(대전)	한국산업인력 공단(대전)	기업	컨설팅팀 (내외부 전문가 등)	기업 → 한국산업인력 공단(대전)	기업 → 한국산업인력 공단(대전)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042-580-9119)

0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홈페이지(www.hrd4u.or.kr)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하고 동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금액
집체훈련 (단기)	■ 훈련대상: 향상훈련(사업장 근로자) 양성훈련(채용예정자/구직자) ■ 훈련내용: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필수 (교양증진, 취미, 외국어, 공통법정 불가) ■ 훈련시간: 최소 4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 훈련정원: 최대 60명	■ 직종별 단가×훈련시간×수료인원×지원율* * 우선지원대상(자체:100%, 위탁:90%) 1,000인미만 대규모(60%) 1,000인이상 대규모(40%) ※ 단, 직무법정훈련은 별도의 지원율(50~20%)적용 (공통법정훈련×)
유급휴가 훈련 (중 · 장기)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계속하여 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 •(非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 대상 계속하여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 훈련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참여훈련시간에 지원한 통상임금액 중 낮은 금액 * 훈련시간 동안 받은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 초과 불가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식비: 3,300원/일 숙식비:14,000원/일 (숙식비지급시 식비지급불가, 최대 33만원/월)

지원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과정 인정 요건 검토·통지	➔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위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사업주·위탁기관		사업주·위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비용지원2부

* (훈련과정 접수) 자체/위탁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심사과정 및 원격훈련-직업능력심사평가원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042-580-9126, 9128)

04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포털 (https://pdms.ncs.go.kr)
일학습병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run-learn)

사업개요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기업 현장 중심의 도제식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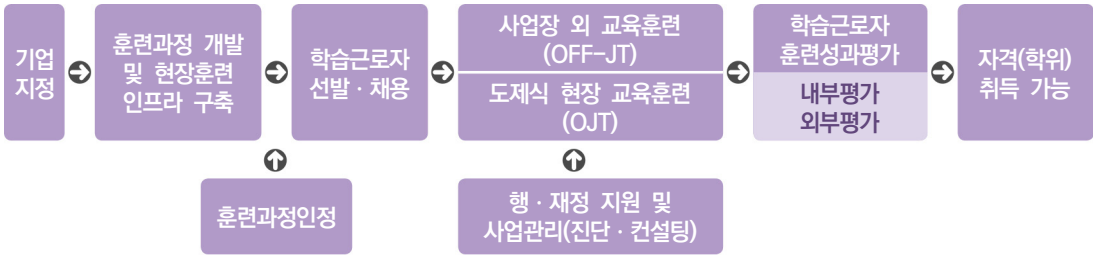

지원 대상 및 기간

- **(선정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훈련대상)** 3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자격부여)** 훈련 이수 후,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지원 내용

-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수당 등 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참여 혜택

- (고용노동부)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1순위 인원배정,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7점)부여,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 가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금 지급 사업(고위험개선) 우선지원대상 선정가점,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 가점, (하나은행)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대상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기업인재혁신부(042-580-9121~9123)

0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개요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표준화한 것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채용, 교육훈련, 성과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 NCS를 폭넓게 활용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에서 NCS를 활용하게 될 경우 장점

- **(채용)** 직무능력중심 인재채용, 입사 시 재교육 비용 절감
- **(교육)**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마련, 직무 맞춤교육으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학습참여 촉진
- **(배치·승진)** 인재에 대한 회사의 기대와 근로자의 역량 간 불일치 해소
- **(임금)** 근로자의 직무역량과 능력에 따라 적정임금 지급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직무분석 및 HR전반(모집선발, 교육훈련, 성과관리, 이동배치, 임금)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공서비스

* 기업 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 도출(필요시 직무재설계 진행)
* 역량 모델링
* 채용 프로세스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 컨설팅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직무능력활용부(052-714-8763), NCS 홈페이지 (www.ncs.go.kr)

문의 직무능력표준국 직무능력활용부(052-714-8763)

06 K-하이테크 플랫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홈페이지(www.hrd4u.or.kr)

사업개요

-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고교생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직무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개방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인프라 비용은 1년차 8억, 2~5년차까지 연간 1년에 최대 5억씩, 5년간 총 28억 지원
- **(훈련비용)** 훈련인원 등 각 훈련사업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구분	예산 사업명		지원 내용
인프라 운영비용	K-디지털 플랫폼		▪ 플랫폼 운영·인프라 구축비 - 시설 임차 및 공간 조성비, 장비 구축비 - 운영비(일반운영비, 인건비) - 디지털 확산 지원비
훈련비용	택1 이상 필수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구직자 과정)	▪ 훈련과정 운영비 - 훈련비 단가 130% 또는 스마트훈련 단가 *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별도 단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구직자 과정)	▪ 훈련과정 운영비(1인당 정부지원금) - 훈련기관이 설정한 시장가격 인정, 50만원 한도 내
	선택 사항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훈련 등	▪ 각 사업별 훈련과정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공동훈련센터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회계감사 및 정산
인력공단		공동 훈련센터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인력공단		공동 훈련센터		회계법인, 인력공단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산업지원부(052-714-8454~5)

07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직업능력개발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내용

- **(사업개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KT·삼성 등 선도기업, 서울대·한양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참여하여,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훈련특징)**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
  -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 경험·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 추구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월 최대 40만원 훈련수당 추가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과정 인정	훈련생 선발 및 실시	훈련비 및 수당 지급	평가
고용노동부 (심평원)	훈련기관 심평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심평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RD홈페이지 www.hrd.go.kr)

08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사업추진체계

심사평가 공고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선정	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	훈련실시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RD홈페이지 www.hrd.go.kr)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chapter 04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1. 국민취업지원제도 82
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84
3. 청년도전지원사업 85
4. 청년성장프로젝트 86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

Ⅰ유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5 ~ 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다만,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Ⅱ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5 ~ 34세** : 소득무관
- **35 ~ 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공통) 재산 무관

* (15 ~ 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및 취업전략 수립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 구인정보 제공 / 동행 면접 등

※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Ⅱ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채용 및 고용유지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자세한 지원요건은 고용24 참조)

소득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x 6개월**
  -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5 ~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참여기관 방문하여 취업상담·알선참여시 월 1회 2만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및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국민취업 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지급

(Ⅱ유형)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기업)에 취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6개월분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40만원의 성공수당 지급(소득 무관)

고용노동부 취업이룸

지원서비스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소득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x 6개월 + 가족수당***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Ⅱ유형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15~25만원(1회)	월 1회 2만원(5회)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Ⅰ·Ⅱ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참여요건

구분	Ⅰ유형		Ⅱ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5~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Ⅰ유형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상인 자

'26년 중위 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중위소득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0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경력개발을 위한 1:1 맞춤형 심층상담서비스

03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목적

- 구직활동에 지치거나 자신감을 잃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1:1 밀착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심리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지자체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확대 가능)

지원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원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 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 시 20만원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없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문의 및 상담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연락처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9-8370~4
동구동락(서포터즈업)	070-4125-2200
청년모아(사회적협동조합세상만사)	042-369-7942
청춘스럽(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	042-523-7736

04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대상

-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지자체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확대 가능)

지원내용

- '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❶ (인프라 제공) 청년 1:1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❷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❸ (후속지원)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청년카페명	연락처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9-8360~3
동구동락(서포터즈업)	070-4125-2200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chapter 05

유관기관 지원사업

1. 근무만족도 제고 프로젝트 90
2. 근로자 안전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91
3. 미래인재 채용연계 인턴십 지원사업 92
4. 경력형 인재 채용지원 장려금사업 93
5. 구조혁신지원사업 94
6. 재정 및 융자 지원 사업 95
7.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96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97
9.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98

01 WITH 우주·국방 인재도약 프로젝트
근무만족도 제고 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규 채용 근로자의 조기 정착과 재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운영 안정화 도모
- **(지원대상)** 대전 소재 우주·국방 산업 영위 기업·근로자(연관 기업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맞춤형 복지·역량 강화 지원
  - 지원금액 : '26년 신규 채용 1인 시 최대 500만 원, 2인 이상 시 최대 1,000만원
  - 지원방식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신규 채용자 포함 기존 재직자에게 활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교통비	청·장년층 근로자 교통비 지원 - 조건 : 참여기업에서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연 40만원 (월 5만원)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인트 지원 - 조건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용 필수	연 40만원 (월 5만원)
건강증진	참여 근로자 본인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 헬스, 필라테스 중 택1 - 조건 : 검진, 접종, 수강 영수증 등 증빙 제출	총 30만원 (1회 지원)
직무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지원 - 조건 : 단순 도서 구매 불가, 수강증 또는 수료증 제출	연 40만원 (1회 지원)
출산/영유아 양육비	출산용품 구입 또는 영유아(~만6세) 양육비 지원 - 조건 : 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연 40만원 (1회 지원)
휴가비	근로자들의 휴식과 재충전 장려를 위한 휴가비 지원 - 조건 : 휴가사용 증명(근태기록 등), 기업 선지급에 대한 이체확인증, 휴가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연 10만원 (1회 지원)
명절 선물비	참여 근로자 대상 명절 선물비 지원 - 조건 : 명절선물 구매 영수증, 수령 확인증 제출	근로자 1인당 5만원 한도
조직문화 개선	신규채용 근로자 조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조건 : 워크샵 등 프로그램 계획서, 증빙사진, 영수증, 참여근로자 명부 증빙	최대 30만원 (1회 지원)

문의 (사)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042-623-0580) (HP) http://www.djic.or.kr/

02 WITH 우주·국방 인재도약 프로젝트
근로자 안전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주국방산업 기업의 작업환경·보안·근로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산업안전 강화와 근로환경 질 제고로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문화 조성
- **(지원대상)** 대전 소재 우주·국방 산업 영위 기업(연관 기업 포함)

지원내용

구분	컨설팅	지원내용(15건)	규 모
작업환경 안전개선	필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설비 구축 및 위험요인 개선 - 집진장치, 안전펜스, 방호커버, 전기 안전설비, 노후 위험 시설 개선 등	기업당 최대 1,300만원 (컨설팅 별도)
정보보안 체계개선	선택	보안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 환경 강화 - 출입통제 장치, CCTV, 서버실 보안,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근로환경 편의개선	-	휴게·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쾌적성 제고 - 휴게실 개선, 냉난방·환기 설비 확충, 작업공간 환경 개선 등	

* 공급가액 외 부가세 등 20% 자부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연계하여 안전개선·정보보안 분야 컨설팅지원(200만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선정기업 협약 → 컨설팅 수행 → 개선사업 수행 → 결과평가 및 사업비 지급

문의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042-861-2002) (HP) http://goodjob.or.kr

03 WITH 우주·국방 인재도약 프로젝트
미래인재 채용연계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턴십 인건비 지원과 채용 연계를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인재의 우주·국방 산업으로의 안정적인 유입 촉진
- **(지원대상)**
  - 기업 : 대전 소재 우주·국방 산업 영위 기업(연관 기업 포함)
  - 청년 : 대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청년

지원내용

- **(우주·국방 기업 인턴십 인건비 지원)** 참여기업이 인턴을 채용·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
  - 1인당 월 150만 원 × 최대 3개월 지원
- **(인턴십 수료 후 채용 전환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인턴십 수료 후 동일 기업에 채용된 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1인당 일시금 150만 원 지원
- **(RISE 사업 연계 인턴십 운영)** RISE 사업과 연계한 대학 추천 인재 풀 구성 및 인턴십 매칭 운영

지원절차

기업·청년 모집 및 선정 ➔ 인턴십 운영 ➔ 채용 연계 ➔ 정착지원금 지급 ➔ 성과관리 및 타 사업 연계

문의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042-368-9707) (HP) https://www.iva.or.kr/

04 WITH 우주·국방 인재도약 프로젝트
경력형 인재 채용지원 장려금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전 우주·국방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형 인력의 신규 채용 및 정착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정주 기반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 대전 소재 우주·국방 산업 영위 기업(연관 기업 포함)
  - 근로자 : 유형1) 만 35~49세 경력·숙련 인력 신규 채용자
    유형2) 만 35세 이상 55세 이하 중·장기 제대군인 신규 채용자

지원내용

- **경력인재 정규직 채용 장려금**

지원항목	수혜대상	지원수준	지급시기	비고
❶사업주장려금	기 업	1인 최대 640만원 (80만원 x 8개월)	매월 지급	연내 최대 8개월 지원
❷근로자장려금	근로자	1인 최대 240만원 (30만원 x 8개월)	매월 지급	
❸고용안정장려금	기 업 (기존재직자)	1인 최대 160만원	일시지급	

* ❶+❷+❸ 패키지 지원

** 사업주·근로자장려금 지급 대상 : 만 35~49세 경력인재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또는 전환한 기업 및 해당 근로자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 입사 3-7년 차 근로자 중 만 39세 미만인 근로자

- **제대군인 민간일자리 전환 장려금**

지원항목	수혜대상	지원수준	지급시기	비고
사업주장려금	기 업	1인 최대 1,040만원 (130만원 x 8개월)	매월 지급	연내 최대 8개월 지원

[제대군인 전환 장려금 지급대상]

① 제대군인 지원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자

② 만 35세 이상의 *중·장기 제대군인 (*5년 이상의 복무를 통해 직무 관련 전문성이 충분함을 확인)

③ 기술직, 연구직, 전문직의 직무로 정규직 신규 고용자 또는 전환자(2026년)

문의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042-368-9701) (HP) https://www.iva.or.kr/

05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여,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
- **(지원규모)** 구조혁신진단 1,0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690개사 내외

구분			세부 지원규모
구조혁신			1,000개사
구조혁신 컨설팅	사업전환	사업전환	300개사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200개사
	산업·일자리전환**		190개사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사업전환 컨설팅 + 디지털전환 컨설팅

** 산업·일자리전환 구조혁신진단·컨설팅은 '26년 1분기 사업예산 확정 후 추진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구분	세부 지원규모
(1)기업현황 입력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 온라인 상 현황입력 및 자료제출
(2)전문가 진단	구조혁신 진단전문가를 통한 구조혁신 수준 진단
(3)결과분석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 분석 및 컨설팅 방향 제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부처별 연계지원 사업을 탐색·추천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042-281-3732)

06 재정 및 융자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 및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중소기업 사업장

지원내용

사업명		대상	품 목	지원한도
1. 안전일터 조성지원 (보조금)	제조 · 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50인 미만	위험설비, 방호장치 등 지정33종 및 자율품목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50인 미만	인공지능(AI)감지시스템 등 지정37종 및 자율품목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소규모 특화	10인 미만	끼임(15종), 부딪힘(18종) 재해예방품목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90%)
2.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대 · 중소 격차 완화	50인 미만 or 소기업	(노후 · 위험 공정 개선 설비) 원재료 물리 · 화학적 제조 설비(폐기조건), 화재 · 폭발 예방설비 등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원 · 하청 상생	50인 미만 or 중소기업		8,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40%) 2,000만원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10%)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위험설비, 방호조치,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장비 등	15억원 한도 연리 1.5%(고정금리)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http://portal.kosha.or.kr) → 사업자(공동·공용인증서) 로그인 → 사업신청·조회 → 사업 신청

문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042-620-5654~7)

07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사업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업종공통)**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전년도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http://portal.kosha.or.kr) → 사업자(공동·공용인증서) 로그인 → 사업신청·조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 인정

- **(인정)**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게 3년간 인정사업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업종공통)**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http://portal.kosha.or.kr) → 사업자(공동·공용인증서) 로그인 → 사업신청·조회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 **(인정혜택)** 산재보험요율 20% 감면(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 지원, 포상·표창 추천, 기획감독 일부 유예 등

위험성평가 교육

-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 실시
-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

※ 산업안전포털교육시스템(http://edu.kosha.or.kr)에서 신청 가능

문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042-620-5695)

0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사업대상)** 제조업 등(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5~49인 중점(50~299인도 신청 가능)

  ※ 대상 업종 :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추진내용)**
  - 사업장 규모·특성을 고려하여 중상해 및 사고사망 위험공정·작업·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 지원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중심으로 지원하여 자기규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지원

추진절차

- **(체계 구축 컨설팅 절차)**

사업공고	➔	수행기관 접수·선정	➔	계약체결	➔	컨설팅 (제조: 1~5차 기타: 1~3차)	모니터링 및 확인 ➔	종결
공단 / 고용부		수행기관→공단		공단 / 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단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http://portal.kosha.or.kr) → 사업자(공동·공용인증서) 로그인 → 사업신청·조회 →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문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042-620-5655~8)

09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교육개요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 본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됨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보험료율 인하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 ※「위험성평가」인정과「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 관련근거「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 사업주교육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업무절차	재해예방활동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취소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 취소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행

세부내용

- **(교육시간)** 4시간 내외
- **(교육기관)** 공단 일선기관
- **(교육수수료)** 무료
-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 **(교육방법)** 집체교육

교육신청 방법

STEP 1	➔	STEP 2	➔	STEP 3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교육참가자 정보 입력

※ 산업안전포털교육시스템(edu.kosha.or.kr) 에서 신청

문의 안전보건공단 콜센터(1644-4544)

2026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노동정보
채용과 지원을 한번에!”

chapter 06

노동관계 법령 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내용 102
2.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106
3.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 110
4.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111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12
6.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113
7.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노동법 가이드 116
8. 일·생활 균형 캠페인 117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18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내용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 의의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에 의해 1주, 1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주요사례**

- 휴게시간·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인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은 근로시간 인정
-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인정
  * 다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 회식
  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불인정

②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기본 근로시간 규정〉		〈주52시간 이내〉	〈주52시간 초과〉
법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	**유연근로제** (운영형태 변경) 탄력, 선택 (계산방법 변경) 재량, 사업장 밖	**연장근로 예외** 특별연장근로, 추가 연장근로, 특례제도

〈근로시간·휴계·휴일 적용제외〉
△농림·축산·수산업 △감·단 승인 근로자 △관리·감독·기밀 업무

법정근로시간

- **(성인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 가산

③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의의

-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 (운영형태 변경)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 * (계산방법 변경)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유의사항

-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제도유형

유 형	내 용	적합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량에 따라 주·일별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2주 이내 탄·근 취업규칙 작성·변경 필요 ▸3개월이내 또는 3~6개월 탄·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업종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제도 ▸취업규칙의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모두 필요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

4 주52시간제의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내용
1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5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제도

* ①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

02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개요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미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주요 내용

01	최저임금	**'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월급(약 2,156,880원)** - '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월급(약 2,096,270원) - 월급은 주 40시간,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 고시금액 기준
02	포함금액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산입해왔으며, 연차별로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03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음
04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00% 적용

【 연도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
  -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주의사항

-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가사도우미 등

-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1.1. ~ 2026.12.31.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 포털시스템 접속(https://kssc.mods.go.kr:8443) → 한국표준직업분류선택 →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1.1. ~ 2026.12.31.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6년 1월 급여 2,405,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기본급	1,62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300,000원
상여금	135,000원
계	**2,405,0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62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135,000원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62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135,000원
계	**2,105,000원**

※ 식대·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미산입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0,071원(2,105,000원 ÷ 209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

0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 -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상생형 중견기업 포함), 산업별·직종별·지역별·산업단지별 등으로 설립 가능

설립 절차

설립합의 〈공동〉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설립등기
사업주들의 설립 합의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 및 감사선임 출연금 협의 및 결정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복지사업 시행

> 노동절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등
>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금법인 설립 세제혜택

- 사업주: 1)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2)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근로자: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기금법인의 복지사업으로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에 비해당
- 기금법인: 1)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42-480-6252)

04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개요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도 안내

- **(신고 대상)**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
> **이직 발생 전·후, 폐업 결정 전·후 등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
> - ▸ 이직 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 지원
> - 이직 후에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 및 재취업지원 제공
> - ▸ 경영악화(폐업 결정 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 고용위기지원 컨설팅, 전직지원프로그램, 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연계
> - 폐업(예정) 단계에서는 실업급여, 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집중

- **(불이행 제재)**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042-470-8311)

0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교육내용

- 아래 4가지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 전문 강사 초빙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 실시

교육 증빙

-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양식은 공단 자료실에서 제공)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06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일터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의 효율적인 일터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 **일터혁신이란?**
>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

  *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제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산업재해 공표기업 등

- **(지원비용)** 전액 무료

  *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20%,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기업은 30%, 연속참여('24년 일터혁신 컨설팅, NCS 컨설팅 참여기업) 기업은 10%의 자부담 부과

- **(지원방식)** 수행기관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개 수행기관 중 택1

- **(컨설팅 유형)**

  - 진단

유형	기간	목적	세부내용
기초진단	2주	기관 현황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노동관계법 준수, 인사시스템 수준 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심층진단	4주		▲노동관계법 준수, 인사시스템 수준 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근로자 인식조사(EOS) 실시

- 컨설팅

유형	신청대상 및 목적
진단컨설팅 (4주)	▲기업이 직면한 인사·노무·조직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
전문컨설팅 (5주~15주)	▲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진단하고,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
심화컨설팅 (10주~20주)	▲기업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고도화 지원

컨설팅 영역

- 총 10개 지원분야, 21개 개선과제로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①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 ② 근무체계 개편(일가정양립 포함), ③ 주4.5일제 도입(근로시간 단축)
② 임금체계	④ 임금관리체계 개선, ⑤ 포괄임금제 개선, ⑥ 임금체계 재설계
③ 근로자 참여 및 협력	⑦ 노사협의회 활성화, ⑧ 노사파트너십 증진, ⑨ 참여적 혁신활동
④ 직장문화	⑩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⑪ 근로자 보호 체계 구축
⑤ 직무역량	⑫ 학습체계 기준 수립, ⑬ 학습체계 설계
⑥ 직무체계	⑭ 직무조사 및 분석, ⑮ 직무 재설계 및 업무기능 개선
⑦ 평가체계	⑯ 평가체계 설계 및 조직관리
⑧ 차별개선·원하청상생	⑰ 차별없는 일터 조성 지원, 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불법 파견 해소
⑨ 공정채용	⑲ 채용제도 진단 및 개선, ⑳ 채용제도 마련 및 운영지원
⑩ 장년친화	㉑ 장년친화 인사제도

신청접수

- **(신청기간)** '26. 3.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고용노동청에서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장 추천 후 사업장에서 신청

심사선정

- **(선정발표)** 유선점검 및 심사 후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을 통해 선정 명단 공고

프로세스

01 컨설팅신청 → 02 유선점검 → 03 심사 및 선정 → 04 컨설팅 착수

→ 05 중간·최종점검 → 06 컨설팅종료 → 07 컨설팅평가 → 08 이행관리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42-480-6255)

07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노동법 가이드

카카오톡 채널 '탄탄대로'

- **(운영주체)** '22. 10월 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
- **(가입대상)** 사업주,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
- **(주요내용)** 주요 노동법 이슈(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최근 노동관계법령 제·개정 내용, 관내 주요 근로감독 사례 등

08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개요

-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핵심 3분야	정시 퇴근하기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보고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연가사용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가족돌봄시간 지켜주기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참여 혜택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홍보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제휴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임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기업(대전청)】

Krispy Kreme DOUGHNUTS	PororoPark	eSoop'e cafe 이수제
크리스피크림도넛 세종청사점	뽀로로파크 세종점	
SIMIN GIFT 홍보기세트 B2B 판촉물 도매전문 시민상사	COFFEE BOOST 커피부스트&오멜	
시민상사 대전점	커피부스트	카페이수페 둔산법원시청점

*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캠페인 참여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가능)
  - '일·생활균형 참여 승인기준'에 따라 14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 참여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임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042-470-8316)

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개요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

주요내용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시기)** '22.1.27.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은 '24.1.27.부터 적용

- **(중대산업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무위반시 처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은 양벌규정 적용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 **(공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042-480-457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안전은 권리입니다

※ 시행일 : '22. 1. 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4. 1. 27.)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frac{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2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2.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3.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웰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2022-교육혁신실-30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3

❶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❷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4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업무별 고용센터 연락처(본 책자 수록 업무 중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구인·구직, 채용지원서비스, 일자리 수요데이			
동구·서구·대덕	042)480-3943	유성·중구·금산	042)480-3949
공주	041)851-8502	세종	044)861-8972
논산	041)731-86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42)480-6019	청년도전지원사업	042)470-8315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042)470-8315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등 기업지원금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042)480-6020, 6073~74	대전·금산	042)480-6013~19
공주	041)851-8507	세종	044)861-8992
논산	041)731-866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042)480-3960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일학습병행제, NCS			
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042)580-9110~29	대전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042)480-6039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생활균형캠페인			
고용허가제	042)470-8321~6	일·생활균형캠페인	042)470-8316
대량고용변동신고	042)470-8311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042)480-6252

☞ 업무분장으로 담당지역 등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는 고용24(work24.go.kr) → QUICK MENU→ "고용센터 찾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 책자는 2026.4.1.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에 확인·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 중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대전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과 ☏ 042-480-3943

MEMO

MEMO

MEMO

MEMO

MEMO

2026년 4월 발행
발행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편집 취업지원총괄과 취업지원팀
042-480-3943